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4. 12. 14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개정(건설교통부령 제399호 2004. 4. 21 개정 공포)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 설치 확인을 신청할 경우, 종전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던 것을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수수료를 정함

○ 1건당 5,000원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연간 예상수입 30만원(2003년 기준)

다. 합 의 : 기획담당관실, 도로교통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04. 11. 15 ~ 2004. 12. 6)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증명>의제5호의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	1건	5,000	
-----------------------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제증명수수료 (단위 : 원)				(별표1) 제증명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증명> 1.~4. (생략) (생략) (생략)				<-----> 1.~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 (5) (생략) (생략) (생략)				5 _____ _____ _____ ----- (1)~(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 설 >				(6) <u>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u> <u>1건</u> <u>5,000</u>			

관계법령발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第47條 (手數料) ①이 법의 規定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申請하거나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교통부령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第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이 委託된 경우에는 당해 受託機關이 정하는 手數料를 해당 受託機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受託機關이 手數料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준을 정하여 建設교통부장관이 위탁한 경우에는 建設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위탁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받은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第5條 (차고지의 설치) ①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4. 21>

②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차고지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일 부터 14일 이내에 차고지 설치여부를 확인한 후 별제 제2호서식의 차고지설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